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89
----------	-----

2025. 10. 15.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9. 30. 한윤수 의원 대표발의(12명 발의)
- 나. 상정의결
 -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5. 10. 15.)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한윤수 의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신체·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과 공중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와 재원 확보 노력 규정(안 제3조)
- 다. 피해예방사업 범위 및 시행 근거 마련(안 제4조)
- 라.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해제 절차 규정(안 제5조)
- 마.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 실시(안 제6조)
- 바.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34조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주현)

가. 제정 취지 및 배경

○ 관내 야생생물 출몰 사례

- 이전부터 도심지역에 나타난 야생동물을 목격하고 신고하는 사례는 존재했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강남구청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관내에 까마귀 떼, 너구리, 고라니, 멧돼지 등 다양한 종이 출몰하여 두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많았음.
- 너구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쇠약한 개체들이 주택가와 아파트 사이에 나타났고, 음식물 쓰레기 등을 뒤적거리는 모습에서 전염성 피부병 걱정을 불러일으킨 것임.
- 너구리 피부병을 유발하는 개선충, 모낭충 등이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어 접촉을 삼가야 하고, 야생동물 출몰을 줄이려면 음식물 쓰레기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과자 등 먹이를 주지 않아야 함.

○ 야생생물법 개정

- 2024년 1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됨.

나. 검토 내용

○ 제정 목적

- 안 제1조는 야생생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1차적 목적임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주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함이 궁극적으로는 공중보건과 주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것임.
- 안 제2조에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는데, 그 중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야생생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먹이를 두어서 생물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범주의 행위를 ‘먹이주기’로 보고 있음.
- 안 제3조는 야생생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피해예방 재원까지 확보하는 것을 구청장의 책무로 보고 있음.
- 안 제4조는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구성 요소를 열거한 것임. 구청장은 야생생물에 대한 먹이주기를 점검하고 단속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이에 연계하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활동까지 할 수 있음.
- 안 제5조는 구청장이 야생생물법 제23조의3 제2항에 근거하여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하는 장소 또는 시기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면서,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주요 목적이 △질병이 전파됨을 차단하고,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함. 지역적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재량으로 판단하여 일정 구역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임.
-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위치 및 범위, △지정 사유 등을 주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강남구보에 고시하라는 것임. 이미 선제적으로 먹이주기 금지 및 제한 권한을 조례로 명시한 서울시 자치

구 중 일부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음.

- 안 제6조는 위 사항을 주민들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것은 이 사업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이해됨.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고 약한 아이들이 대응 요령을 알지 못한 채 야생생물을 마주쳤다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 생태계 교란을 유발하는 몇몇 종을 호기심에 만졌다가 해를 입었다는 사례 등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 교육이 활성화되면 점차적으로 이런 사례들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7조는 야생생물의 특성과 인력과 자원도 매우 부족한 현실상 주무부서가 단독으로 대처하기는 어렵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해진 규정임.
- 실제로 출몰한 야생생물의 습성이나 행동 반경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바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경우가 있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다. 종합 의견

○ 민원 해소 기대

- 관내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의 효과는 △울타리 설치로 피해 야기 제한, △개체 수 제한 및 질병 전파 예방, △쓰레기 발생량 감소, △주민들의 생활안전 확보 기여 등으로 기대되며, 제도기간을 거쳐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범위에서 부서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관계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野生化)된 가축이나 반려동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붙임 1] 각 지방자치단체별 먹이주기 금지 관련 조례 (2025. 9. 기준)

순번	조례 제명	담당부서	제정연도
1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자연생태과	2025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푸른도시과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공원녹지과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여가도시과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원녹지과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공원녹지과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공원녹지과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푸른도시과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정원도시과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공원녹지과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정원도시과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	공원녹지과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푸른도시과	2024

정원도시 서울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도시공원
22곳

천호공원, 매현시민의숲,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대현산 배수지공원, 율현공원,
남산공원, 낙산공원, 용산가족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서서울호수공원, 문화비축기지,
선유도공원, 보라매공원, 북서울꿈의숲,
중랑캠핑숲, 서울창포원,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 서울대공원, 능동어린이대공원



한강공원
11곳

여의도한강공원, 난지한강공원, 강서한강공원,
양화한강공원, 광나루한강공원, 잠실한강공원,
뚝섬한강공원, 잠원한강공원, 이촌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망원한강공원



문화재보호구역
1곳

수도박물관



광장
4곳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세종로공원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5. 10. 15.)

- 질 의 : 본 제정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 답 변 : 현재 야생동물과 관련해 연간 민원이 100여 건 정도 접수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집비둘기에게 먹이주기와 너구리 출몰 관련 민원임. 양재천을 비롯해서 47개소에 플래카드와 안내간판을 설치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 조례가 시행이 되면, 추가 설치와 적극 홍보가 가능하도록 하겠음

7. 토론 요지

- 항·호 규정이 입법 형식에 맞도록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